

의안번호	2211043
의 퇴 인	송석준의원
회 답 일	2025.7.1.
추계번호	25B338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u>조명 시설</u>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22조제1항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 <u>이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함</u> (제1항) • (현행) <u>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u> • (개정안) 도시공원 <u>이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함</u>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2조제1항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2. 상세사유

□ (안 제19조의2) 개정안은 공원관리청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지점에 조명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향후 주요 지점에 조명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현행 도시공원 내 주요지점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설치에 관한 시행령²⁾ 규정을 참고하면, 개정안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지점과 수량은 주민과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설치 대상지 및 수량, 단가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전국 도시공원 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안 제22조제1항) 개정안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어 순찰인력, 관련 조직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해당 안전관리 조치의 구체적인 방식, 인력 기준, 순찰 주기 및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도시공원별 안전관리 조치에 따른 순찰인력 증원, 조직재편 및 장비확보 수요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정적이어서, 해당 조치 시행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1)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제1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도시공원 현황

(단위: 개소)

도시명	소계	소공원	어린이공 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기타
총계	2,190	439	1,203	437	15	64	32
서울특별시	2,190	439	1,203	437	15	64	32
부산광역시	1,061	360	431	166	6	34	64
대구광역시	838	133	482	164	4	17	38
인천광역시	1,245	167	626	343	4	40	65
광주광역시	673	94	396	153	12	4	14
대전광역시	614	109	315	111	8	24	47
울산광역시	597	130	327	105	7	8	20
세종특별자치시	348	44	78	86	10	82	48
경기도 소계	6,551	1,564	2,722	1,422	72	304	467
강원특별자치도	856	168	406	186	11	31	54
충청북도	1,015	262	391	257	20	26	59
충청남도	1,214	328	493	294	23	25	51
전라북도	766	163	319	231	10	20	23
전라남도	1,386	536	362	306	34	55	93
경상북도	1,760	463	794	345	23	54	81
경상남도	1,796	486	734	378	38	60	100
제주특별자치도	253	4	151	80	4	6	8

주: 기타 공원에는 도시자연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2023), 도시계획현황 통계